

불임2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관련 주요 문의사항(FAQ)

□ 응시자격요건 관련

Q1) 민경채에 응시하기 위한 필요 경력의 범위에 공무원이나 직업군인 경력은 포함되지 않나요?

A1) 민경채는 우수한 민간전문가의 역량을 공직에서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시험으로, 그 취지 상 공무원이나 군인(특정직 공무원에 해당) 재직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임기제(계약직)공무원 및 국공립대 교원(강의·연구) 경력,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군의관, 공익법무관·군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수의장교 근무경력은 예외적으로 인정

※ 외국 공무원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과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분야에 해당한다면 인정

Q2) 원서접수 전에 응시자의 경력이나 학위, 자격증이 특정 선발단위 응시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줄 수 있나요?

A2) 응시자의 경력·학위·자격이 응시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서류전형위원회를 통해 평가되는 것으로서, 인사혁신처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 응시자격요건 충족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이후 서류전형위원회를 통해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평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경력·학위·자격 중 복수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떤 요건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3) 1개 이상의 응시요건 충족 시 어떤 요건을 선택하는 것이 합격에 유리한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응시자가 선택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선택하지 않은 다른 응시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적격으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추가합격 여부는 응시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Q4) 올해(2020년) 내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또는 자격증) 취득 예정인데 응시가 가능한가요?

A4) 공고문 상의 최종시험 예정일(5급: 2020.11.21. / 7급: 2020.11.12.)까지 취득하는 경우 응시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학위취득은 학위수여일(졸업증명서 등에 기재되는 일자)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학위수여일이 최종시험 예정일 이전이어야만 함

Q5) 특정 기관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대학 등에서 강의를 했는데, 별도 계산하여 경력 합산이 가능한가요?

A5) 같은 기간에 근무·연구(강의 포함)한 복수의 경력은 동시에 인정되어 합산 되지는 않으나, 서류전형 시 정성평가를 통해서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Q6) 선발단위별 응시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까?

A6)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임용예정기관(부처)과 협의하여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력·자격 등으로 설정되었으며, 일부 선발단위는 부처의 요구에 따라 요건을 강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Q7) 선발단위별 우대요건은 모든 시험단계에서 인정되나요? 공통 우대요건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7) 그렇지 않습니다.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가점으로 반영되는 항목이며, 한국사능력검정 또한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5% 이내로 반영됩니다.

※ 1·2·3급 점수 동일

Q8) 학위나 자격증 요건에 추가로 요구되는 경력은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8) 학위나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되며, 경력요건과 마찬가지로 법인 등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공고문 상 [경력의 범위] 항목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퇴직 후 3년 미경과"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9) 비정규직(대학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도 합산되어 인정받을 수 있나요?

A9) 네. 비정규직이라도 관련분야 경력임이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전임(전일제)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주 40시간 기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한 경우 $4\text{년} \times (20\text{시간}/40\text{시간}) = 2\text{년 인정}$

A9-1) 단, 각종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며 강의시간 외에도 강의를 위한 연구 및 준비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 40시간이 아닌 「고등교육법」 상 교원의 교수시간인 주 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경력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예) 시간강사로 1년간 주 6시간 강의한 경우 $1\text{년} \times (6\text{시간}/9\text{시간}) = 8\text{개월 인정}$

Q10) 코로나19 확산으로 어학시험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는데 기준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응시자에 대한 대책은?

A10)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어학성적은 서류전형등록 마감일(2020.8.27.)까지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면 인정됨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 SNULT, 신HSK, JPT)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니,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최종시험 예정일 (5급 2020.11.21./7급 2020.11.12.) 전에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을 해야 함

□ 원서접수 관련

Q1) 원서접수를 하려면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가입하여야만 하나요?

A1) 그렇습니다. 응시원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므로,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선 반드시 가입하셔야만 합니다.

Q2) 응시원서를 일단 접수한 후에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A2) 원서접수기간 동안에는 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서접수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3일간의 취소기간 중에도 취소만 가능합니다.

Q3) 원서접수를 완료했는데, 응시표는 언제부터 출력이 가능한가요?

A3) 응시번호가 원서접수 취소기간 마감 후 부여되므로, 응시표 출력도 그 이후 가능합니다.

Q4) 5급과 7급 시험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나요?

A4) 민경채 5급과 7급은 필기시험 날짜가 동일하므로,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응시원서는 1회(1개 선발단위, 1개 응시자격요건)만 제출 가능합니다.

□ 임용 등 합격 이후 관련

Q1) 최종합격 후 임용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A1) 5급 민경채 합격자는 2021년 상반기 중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본교육을 거쳐 임용될 예정이며, 7급 민경채 합격자는 기관 사정에 따라 1월 이후 임용되어 기관별로 기본교육을 받게 됩니다.

Q2) 최종합격 후 호봉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2) 신규채용 시 초임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임용예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책정하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별표17, 별표19의 경력환산율표 등에 따라 최대 100%까지 인정됩니다.

※ 다만, 응시자격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 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호봉 책정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Q3) 민경채 직무별 합격자는 차후 해당 직무에서만 계속 일하게 되는 건가요?

A3) 민경채를 통해 임용된 공무원은 현행 법령상 최초 임용일로부터 4년 간 전보가 제한되나, 그 이후부터는 공채 출신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의 인사관리 또는 담당업무 사정에 따라 전문직위제 지정 등을 통해 전보가 최대 8년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문경력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전문경력관 규정 등에 따라 최초 임용이후 다른 직위로의 이동이 제한됨